

noticeld

## 전시 A를가있는 사기가 아닌 결정

이름  
주소 1  
주소 2  
도시,  
주우편번호

발행 ID:

발송된 결정:  
사회보장번호:  
배치 번호:  
항소권리만료:

청구자 ID:

지역사무소:      고객콜센터  
회의개최:  
현재상황:      청구인(본인이 직접청구)  
조사자:

감사통지 :귀하의실업보험혜택에대한감사가이루어졌습니다.

조사결과 : 9999 년 99 월 99 일부터 9999 년 99 월  
99 일까지의기간동안귀하는<회사이름>와함께귀하의직업과수입에대하여올바르고정확하게보고하지못했습니다.  
위원회증거자료 "A"를참조하십시오.

초과지불결정 :위의이유로인해, 귀하는 N.C.Gen. Stat. §96-18 (g) (2) 에 따라초과지불되었습니다.  
이것은환불을요구하는통지입니다.

\$	이결정의결과로초과지불
\$	초과지급 전 금액
\$	이결정날짜이전에보상을받음
\$	요구되는환급의잔액

귀하의이름과사회보장번호의마지막네자리숫자를귀하의지불에포함시켜다음의주소로보

내주십시오:                      노스 캐롤라이나 고용 안정 급여 지  
   불 통제 단위  
   우체국 상자 25903  
   Raleigh, NC 27611-5903

환불을위한조치가필요한경우,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주의 Raleigh 에 있는본부사무실(Central Office)  
부서에 919.707.1338 로전화하십시오.

UI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des.nc.gov](http://des.nc.gov)에서 UI 사기로 의심되는 항목 게시  
사무실 상자 25903 Raleigh, 노스 캐롤라이나 27611-5903



noticeld

**항소권리 :**

항소권리 만료일 이전에 불만이 제기된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없는한 이결정은 최종적입니다. 이 항소는 <https://des.nc.gov>의포털에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수있으며 메일로 고용안전부항소부서, 노스캐롤라이나 (North Carolina) 의 Raleigh, NC 27611-5903 에있는우체국사서함 25903 로보내거나 ; 팩스번호 919.857.1296 에보낼수있습니다. 추가정보는동봉된항소자료및신문자료웹플릿을참조하십시오.

중요공지사항 :이결정에의해초과지불이생성된경우고용안전부의급여무결성 / 급여지불조종부서로부터초과지급통지가우편으로발송됩니다.

이문서는다른것들중에서도초과지급액과적용가능한처벌을명시합니다.

초과지불에이의제기할수있는유일한방법은노스캐롤라이나법률및고용안전부규정에따라이결정및초과지불결과에항소하는것입니다. 급여를받으려는청구자가이의제기를취소한경우, 수령한급여는해당부서에상환해야하는초과지급금액이됩니다. 이법은 "어떤이유로든" 자격이없는급여를수령한모든사람들이임의의부서또는사법적준위에서결정이항소로취소된경우를포함하여수령한급여를상환해야할의무가있음을요구합니다. N.C. Gen. Stat. §96-18(g)(2).

**급여의 환불**

어떤이유로든 (부서의대리인의실수를포함), 귀하는제 96 장에따라귀하에게자격이부여되지않은급여로금액을지급받았을경우, 귀하는그금액을 N.C Gen. Stat. §96-18(g)(2) 의부서에환불해야합니다.

**초과지급금액회수**

N.C. Gen. Stat. § 96-18 (g) (3) 에따라부서는다음중하나이상의절차를수행하여초과지급금액을징수할수있습니다:

1. 지불해야할초과지급금액은부서의이름으로민사소송으로징수할수있으며그러한조치의비용은귀하에게과세됩니다.
2. 통지가있은후 30 일이내에초과지급금액이상환되지않고동일한요구가접수된경우, 부서는귀하가거주하거나재산을가지고있는주의법원서기에같은내용을확인하고해당주에있는귀하의재산에대한판결이결정될것입니다.
3. 초과지급액은제 96 장에의거하여귀하에게지급될앞으로의급여로부터공제될수있습니다.

초과지급액이충족될때까지또는귀하의수급권이소진될때까지주간수당액의최대 (50 %)를공제할수있습니다.

**초과지급금액의포기**

N.C. Gen. Stat. § 96-4(s)가 제공한것에의해, 부서는합당한사유가있으면 N.C. Gen. Stat. § 96-18(g)(2)에따라발생하는초과지급금액의전부혹은일부를면제할수있습니다.

초과급여혜택을받은것으로밝혀진개인초과지불을면제하기위해부서에청원할수있습니다.청원서제출의내용과절차는고용안전부의규정 20A 및 20B 에의해규정되며, 이는고용안전부의법률서비스부서(전화번호 919.707.1025) 에연락하여문의할수있습니다.

**고용의종료**

부서에지불해야할금액을모두환불한해당주정부또는특정지방교육기관의직원으로서비영리공무원또는입법자는지속적으로고용되어야합니다.의무의서면통지가제공될것입니다. 합리적인기간후에의무가시작되지않은경우, 행정기관이나사법기관의구제조치가취해지지않는한고용기관은고용종료절차를밧아야합니다.N.C. Gen. Stat. §143-5553.



## 전시 A를가없는 사기가 아닌 결정

이름  
주소 1  
주소 2  
도시, 주, 우편번호

발행 ID:  
발송된 결정: 사회보장번호:XXX-XX-XXXX박쥐.XXX-  
XX 항소권리만료:  
청구자 ID:

지역사무소: 고객 콜센터  
회의개최: 2015 년 08 월 29 일  
현재상황: 청구인(본인이 직접청구)  
조사자: Susan Doe

감사통지 :귀하의실업보험급여청구에대한감사가이루어졌습니다.

조사결과 : 9999 년 99 월 99 일부터 9999 년 99 월 25 일까지의기간동안귀하는<회사이름>와함께귀하의직업과수입에대하여올바르고정확하게보고하지못했습니다.  
초과지불결정 :위의이유로인해, 귀하는 N.C.Gen. Stat. §96-18 (g) (2) 에 따라서초과지불되었습니다.  
이것은환불을요구하는통지입니다.

\$000.00	이결정의결과로초과지불
\$0	초과지급 전 금액
\$0	이결정날짜이전에보상을받음
\$000.00	요구되는환급의잔액

귀하의이름과사회보장번호의마지막네자리숫자를귀하의지불에포함시켜다음의주소로보내주십시오:

노스 캐롤라이나 고용 안정 급여 지  
불 통제 단위  
우체국 상자 25903  
Raleigh, NC 27611-5903

환불을위한조치가필요한경우,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주 Raleigh 에 있는 본부사무실(Central Office) 부서에 919.707.1338 로전화하십시오.

UI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des.nc.gov](http://des.nc.gov)에서 UI 사기로 의심되는 항목 게시  
사무실 상자 25903 Raleigh, 노스 캐롤라이나 27611-5903



noticeld

**항소권리:**

항소권리만료일이전에불만이제기된당사자의이의제기가제기되지않는한이결정은최종적입니다. 이항소는 des.nc.gov 의포털에로그인하여온라인으로제출할수있으며메일로그용안전부항소부서,노스캐롤라이나 (North Carolina) 의 Raleigh, NC 27611-5903 에있는우체국사서함 25903 로보내거나 ; 팩스번호 919.857.1296 에보낼수있습니다. 추가정보는동봉된항소자료및신문자료팩플릿을참조하십시오.

**중요공지사항:**이결정에의해초과지불이생성된경우고용안전부의급여무결성 / 급여지불조종부서로부터초과지급통지가우편으로발송됩니다.

이문서는다른것들중에서도초과지급액과적용가능한처벌을명시합니다. 초과지불에이의를제기할수있는유일한방법은노스캐롤라이나법률및고용안전부규정에따라이결정및초과지불결과에항소하는것입니다. 급여를받으려는청구자가이의제기를취소한경우, 수령한급여는해당부서에상환해야하는초과지급금액이됩니다. 이법은"어떤이유로든" 자격이없는급여를수령한모든사람들이임의의부서또는사법적준위에서결정이항소로취소된경우를포함하여수령한급여를상환해야할의무가있음을요구합니다. N.C. Gen. Stat. §96-18(g)(2).

**급여의 환불**

어떤이유로든 (부서의대리인의실수를포함하여),귀하는제 96 장에따라귀하에게자격이부여되지않은급여로금액을지급받았을경우, 귀하는그금액을 N.C Gen. Stat. §96-18(g)(2) 의부서에환불해야합니다.

**초과지급금액회수**

N.C. Gen. Stat. § 96-18 (g) (3) 에따라부서는다음중하나이상의절차를수행하여초과지급금액을징수할수있습니다:

4. 지불해야할초과지급금액은부서의이름으로민사소송으로징수할수있으며그러한조치의비용은귀하에게과세됩니다.
5. 통지가있은후 30 일 이내에초과지급금액이상환되지않고동일한요구가접수된경우, 부서는귀하가거주하거나재산을가지고있는주의법원서기에게같은내용을확인하고해당주에있는귀하의재산에대한판결이결정될것입니다.
6. 초과지급액은제 96 장에의거하여귀하에게지급될앞으로의급여로부터공제될수있습니다.

초과지급액이충족될때까지또는귀하의수급권이소진될때까지주간수당액의최대 (50 %)를공제할수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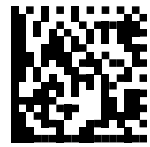
**초과지급금액의포기**

N.C. Gen. Stat. § 96-4(s)에서제공한것에의해, 부서는합당한사유가있으면 N.C. Gen. Stat. § 96-18(g)(2) 에따라발생하는초과지급금액의전부혹은일부를면제할수있습니다.

초과급여혜택을받은것으로밝혀진개인은초과지급을면제하기위해부서에청원할수있습니다.청원서제출의내용과절차는고용안전부의규정 20A 및 20B 에의해규정되며, 이는고용안전부의법률서비스부서(전화번호 919.707.1025) 에연락하여문의할수있습니다.

**고용의종료**

부서에지불해야할금액을모두환불한이주또는특정지방교육기관의직원으로서비영리공무원또는입법자는지속적으로고용되어야합니다.의무의서면통지가제공될것입니다. 합리적인기간후에의무가시작되지않은경우, 행정기관이나사법기관의구제조치가취해지지않는한고용기관은고용종료절차를밟아야합니다.N.C. Gen. Stat. §143-5553.



noticeld

### Exhibit A가 포함된 결정 사기

사기결정 :귀하는 N.C. Gen. Stat §96-18 (e) 에따라 9999 년 99 월 99 일에서 0000 년 99 월 99 일까지 9  
년간급여을받을자격이없습니다.

이유 :당신은실업보험급여을청구하면서의도적으로거짓진술을하거나중요한사실을공개하지않았습니다.

9999 년 99 월 99 일에서 9999년

05 월 02 일까지의기간동안<회사이름>과함께귀하의업무와수입을적절하고올바르게보고하지못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부서의증거자료 "A"의첨부사본을참조하십시오.

\$0000.00

이결정의결과로초과지불

\$000.00

사기초과지불에대한처벌

\$0

초과지불이전금액

\$0

이결정날짜이전에보상을받음

\$0000.00

요구되는환급의잔액

귀하의이름과사회보장번호의마지막네자리숫자를귀하의결제에포함시켜다음의주소로보

내주십시오:

NC Division of Employment Security  
Benefit Payment Control Unit  
Post Office Box25903  
Raleigh, NC27611-5903

환불을위한조치가필요한경우,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주 Raleigh 에 있는본부사무실(Central Office)  
부서에 919.707.1338 로전화하십시오.

항소권리 :

항소권리만료일이전에불만이제기된당사자의이의제기가제기되지않는한이결정은최종적입니다. 이항소는  
des.nc.gov 의포털에로그인하여온라인으로제출할수있으며메일로고용안전부항소부서,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의 Raleigh, 27611-5903 에있는우체국사서함 25903 로보내거나 ; 팩스번호 919.857.1296  
에보낼수있습니다. 추가정보는동봉된항소자료및신문자료팸플릿을참조하십시오.

중요공지사항 :이결정에의해초과지불이생성된경우고용안전부의급여무결성 / 급여지불조종부서로  
부터초과지급통지가우편으로발송됩니다.

이문서는다른것들중에서도초과지급액과적용가능한처벌을명시합니다.

초과지불에이의제기할수있는유일한방법은노스캐롤라이나법률및고용안전부규정에따라이결정및초과지불결  
과에항소하는것입니다. 급여를받으려는청구자가이의제기를취소한경우,

수령한급여는해당부서에상환해야하는초과지급금액이됩니다. 이법은 "어떤이유로든"

자격이없는급여를수령한모든사람들이임의의부서또는사법적준위에서결정이항소로취소된경우를포함하여수령  
한급여를상환해야할의무가있음을요구합니다. N.C. Gen. Stat. §96-18(g)(2).

#### 처벌

당신또는당신을대신하거나당신에대하여알고있는다른사람이고의로속이거나또는허위진술을한것으로판명된경우,  
또는제 96 장에따르는급여또는기타지불을얻거나증가시키기위해고의적으로중요한사실을공개하지않은경우,  
당신은다음과같은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noticeld

### 형사고발

-- 9999 년 99 월 99 일이전주 -제 9999 장또는기타주, 연방정부또는외국정부의고용안정법에따라급여을언거나 증가시키기위해중대한사실을공개하지않은거짓진술또는허위진술은각각경범죄가됩니다. 이범죄는벌금및 / 또는투 옥의대상이됩니다. N.C.Gen. Stat. § 96-18 (a).

--2012 년 12 월 1 일이후의주 -제 96 장또는기타주, 연방정부또는외국정부의고용안정법에따라급여을언거나증가시키기위해중대한사실을공개하지않은각거짓진술또 는허위진술은상기금액이 \$ 000.00 를초과하는경우중범죄로됩니다.이범죄는벌금및 / 또는투옥의대상이됩니 다.N.C. Gen. Stat. § 96-18 (a).

### 급여의환불

제 96 장에따라사기행위또는태만그리고자격이없을때에는수령한모든급여를부서에상환할책임이있습니다. N.C. Gen. Stat. § 96-18 (g)(2).

### 연방정부의형벌

연방법은연방기금을포함하는청구에대하여고의적허위진술을통해실업수당을얻은데대해서는추가로심각한형벌을부 과합니다. 위반자에게는 \$ 1,000 (천달러)에서 \$ 10,000 (만달러)까지의최대벌금및징역형이적용될수있습니다.2013 년 10 월 1 일부터초과지급금액에대한사기결정에는초과지급액의 15 %에해당하는벌금이부과됩니다. N.C. Gen. Stat. § 96-18 (h).

### 초과지급금액회수

N.C. Gen. Stat. § 96-18 (g) (3) 에따라부서는다음중하나이상의절차를 수행하여초과지급금액을징수할수있습니다:

1. 지불해야할초과지급금액은부서의이름으로민사소송으로징수할수있으며그러한조치의비용은귀하에 게과세됩니다.
2. 통지가있은후 30 일 이내에초과지급금액이상환되지않고동일한요구가접수된경우, 부서는귀하가거주하거나재산을가지고있는주의법원서기에같은내용을확인하고해당주에있는귀 하의재산에대한판결이결정될것입니다.
3. 초과지급액은제 96 장에의거하여귀하에게지급될앞으로의급여로부터공제될수있습니다.

### 고용의종료

부서에지불해야할금액을모두환불한이주또는특정지방교육기관의직원으로서비영리공무원또는입법자는지속적으 로고용되어야합니다.의무의서면통지가제공될것입니다. 합리적인기간후에의무가시작되지않은경우, 행정기관이나사법기관의구제조치가취해지지않는한고용기관은고용종료절차를밟아야합니다.N.C. Gen. Stat. §143-5553.



noticeld

## 결정은 직업검색입니다.

### 결정

청구자는 2015년 08월 16일부터 2015년 08월 22일까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유

청구인은 2015년 07월 12일에 발효되어 2015년 08월 29일까지 지속된 국민소득위원회(NIC) 청구에 실패했습니다.

<날짜>로 끝나는 주 동안 청구자의 직업 검색은 4개의 직업 검색 연락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업 검색 목록>.

<연락처 목록>에 있는 직업 검색 연락처는 현존되지 않는 품질 관리 조사관에 따라 다릅니다. 청구인은 일주일에 최소 두 명의 연락처 담당자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직업 검색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청구인은 <날짜>에 대한 요구 사항을 알고 있었습니다.

### 결론

N.C. Gen. Stat. § 96-13 (a) (3)

은 실업자가 적극적으로 직업을 찾고 있다고 부서에 서인정 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에 기초하여, 청구자가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직업 검색. 항소 권리 :

항소 권리 만료일이 전에 불만이 제기된 당사자의 이의 제기가 없는 한 이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이 항소는 <https://des.nc.gov> 의 포털에 로그인 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메일로 고용 안전 부 항소 부서, 노스 캐롤라이나 (North Carolina) 의 Raleigh 에 있는 우체국 사서함 25903 로 보내거나 ; 팩스 번호 919.857.1296 에 보낼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동봉된 항소 자료 및 신문 자료 팸플릿을 참조하십시오.

중요 공지 사항 : 이 결정에 의해 초과 지불이 생성된 경우 고용 안전 부의 급여 무결성 / 급여 지불 조종 부서로부터 초과 지급 통지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이 문서는 다른 것들 중에서도 초과 지급액과 적용 가능한 처벌을 명시합니다.

초과 지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스 캐롤라이나 법률 및 고용 안전 부 규정에 따라 이 결정 및 초과 지불 결과에 항소하는 것입니다. 급여를 받으려는 청구자가 이의 제기를 취소한 경우,

수령한 급여는 해당 부서에 상환해야 하는 초과 지급 금액이 됩니다. 이 법은 "어떤 이유로든"

자격이 없는 급여를 수령한 모든 사람들이 임의의 부서 또는 사법적 준위에서 결정이 항소로 취소된 경우를 포함하여 수령한 급여를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요구합니다. N.C. Gen. Stat. §96-18(g)(2).